

III. 외국의 보험부채 평가제도

국제보험회계기준을 둘러싼 IASB의 논의는 2004년 9월에 설치된 Insurance Working Group에서 검토가 진행되었으나 현재 IASB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있다⁸⁾. 2005년 1월 이사회에 대해 향후 검토 일정이 논의되었으나 Insurance Working Group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는 보험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보험부채의 시가평가가 오히려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이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보험회사들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법의 선택에 대한 문제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IASB의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 도입에 대한 입장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현재 시가평가를 지향하는 주요 3개국인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를 대상으로 시가평가 회계를 중심으로 하는 IFRS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캐나다

제2장에서도 밝혔듯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방향성은 미래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하는 자산·부채평가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캐나다는 이미 보험부채 평가시 “캐나다식 자산부채평가법”(CALM)⁹⁾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캐나다의 보

8) 2005년 5월에 손해보험관계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사회에 의한 생명보험부채의 평가에 관한 아무런 의사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험부채평가제도에 대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발생하게 될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CALM은 IASB에서 주목하고 있는 보험부채평가제도로 동 제도의 검토는 국제동향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가. 캐나다의 보험부채평가제도의 변천

캐나다 보험부채평가제도의 변천은 크게 4세대로 나누어질 수 있다. 1978년 이전 순보험료식준비금제도를 운영한 1기는 현재 국내 순보험료식준비금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제2기는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운영되어온 "Can78 Method"로 불리우는 방식인데 이는 순보험료식준비금제도가기는 하지만 모든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는 PPM¹⁰⁾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었는데, 이는 영업보험료식 준비금제도로써, 기초율 설정시 PAD¹¹⁾를 설정·운영하며,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과 SAP(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시점부터 선진적인 계리적 기법이라 할 수 있는 최적추정치를 근간으로 한 보험부채에 대한 공정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CALM이라 일컬어지는 캐나다방식의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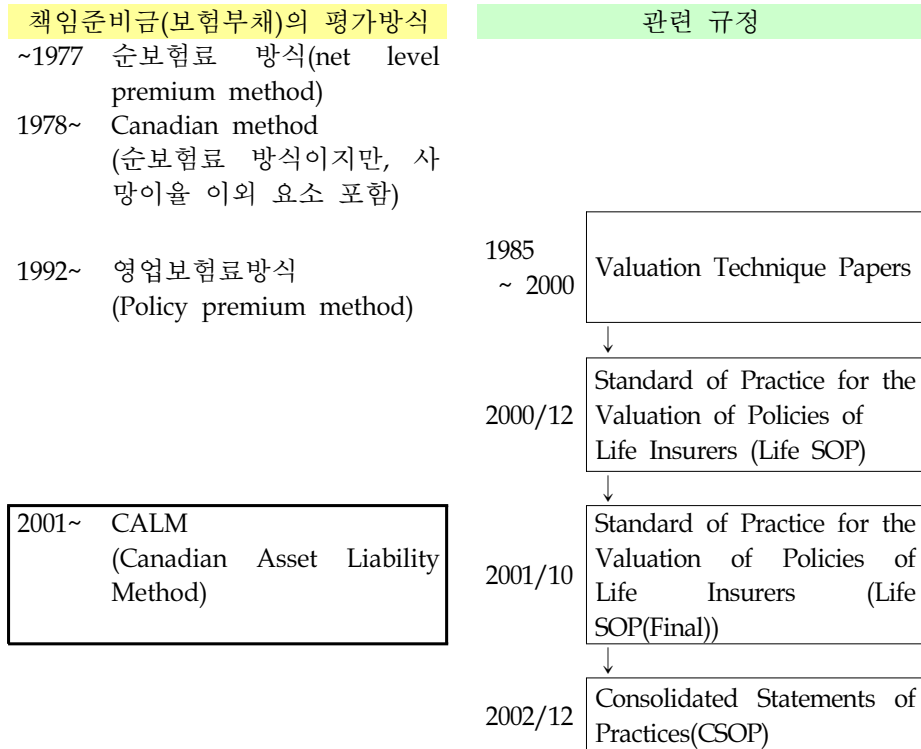
9) CALM : Canadian Asset-Liability Method(캐나다식 자산부채평가법). 캐나다의 CIA(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 : 캐나다 계리사회)에서 제정하는 "Standards of Practice for the Valuation of Policy Liabilities of Life Insurers"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10) PPM : Policy Premium Method(영업보험료방식 보험부채평가법). 캐나다에서 2002년 이전까지 적용한 방식으로 영국의 영업보험료식 준비금제도와 유사한 형태이다.

11) PAD : Provision for Adverse Deviation(역편차마진준비금). 기초율의 미래 변동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부채평가법을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렀다(<그림Ⅲ-1>참고).

<그림 Ⅲ-1> 캐나다의 보험부채평가제도의 변천



출처 : 캐나다 공인회계사회(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나. 캐나다의 보험감독규제환경

캐나다의 보험시장 규제는 “Insurance Companies Act(ICA)”에 기초하고 있으며, ICA는 연방법으로서 보험회사의 운영에 대한 통제를 목

적으로 하며,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계 측면에서의 규제는 CICA 및 CIA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CICA는 모든 산업에 대한 회계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CIA에서는 보험회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I-1> 캐나다의 보험시장 규제환경

구분	규제 내용
Insurance Companies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법 - 보험회사운영통제 - 보고서 선정 및 C-GAAP 사용 - 선임계리사의 역할 정의
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C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CA Handbooks은 C-GAAP을 정의 -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함 - 보험회사에 대한 특별규정 (자산과 계약부채)
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 (C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ndards of Practice for the valuation of policy liabilities of life insurers 2001.10 - Consolidated Statement of Practices (Life, P&C, Pensions) 2002.12 - Standards for Dynamic Capital Adequacy Testing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수리 실무로서 CIA 재무보고 권고 (Financial Reporting Recommendations of CIA) 및 13가지 문서로 구성된 "Valuation Technique Papers"가 CIA로부터 공표되어 왔다. 그 후, 이를 집약하여 수차례에 걸친 초안 공개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Standard of Practice for the Valuation of Policies of Life Insurers"¹²⁾(이하, Life SOP)로 2001년 10월에 정리되었다. 이 실무 기준은 CALM이라고 명명된 보험부채인 책임준비금 평가방법으로 2001년

12) Committee on life insurance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Of Practice For The Valuation Of Policies Of Life Insurers*, 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 2001. 10.

도부터 적용되었다.

또한, Life SOP는 2002년 12월에 손해보험, 연금 등의 규정과 함께, "Consolidated Statements of Practices(CSOP)¹³⁾"(통합 실무 기준)으로 통합되었다.¹⁴⁾

다. 캐나다의 보험부채평가제도의 주요 내용

캐나다의 보험부채평가제도의 특징으로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정에 따라 현금흐름을 분석한 후, 부채현금흐름이 종료되는 시점인 만기시점 등의 잉여금이 "0"이 되도록 최초자산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부채의 현금흐름에 맞게 자산을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IASB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산·부채법에 가장 유사한 형태인 일종의 현금흐름방식으로 자산과 부채 현금흐름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CALM의 평가방법은 1단계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최선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최선추정에 의한 예측 시나리오로 현금흐름을 추정 한 후, 2단계로 현금흐름가정에 마진을 추가함으로써 이자율 위험을 제외한 PAD를 추가한다. 3단계로 2단계에서 수정된 현금흐름가정에 대한 시나리오 검사를 통하여 이자율 위험에 대한 PAD를 추가하고, 4단계로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되는 리스크의 특성을 고려하여 2, 3단계에서의 PAD를 조정하게 된다.

13) CSOP는 General Standard(일반 원칙)와 3개의 업종별 기준, Insurers, Pension Plans, Public Personal Injury Compensation Plans로 구성되어 있다.

14) CSOP의 제정에 수반해, 기존 규정은 폐지되었지만 CSOP 내용 중에는 CALM를 정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서 Life SOP도 실질적으로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 III-2> CALM 평가방법 순서

평가순서	주요내용
Step1	- 자산·부채 현금흐름에 대한 최선추정 현금흐름가정에 PAD가 포함되지 않은 최선추정치 선택 후, 최선추정에 의한 예측시나리오로 현금흐름 추정
Step2	- 현금흐름가정에 마진을 적용함으로써 이자율 위험을 제외한 PAD추가
Step3	- 2단계에서 수정된 현금흐름가정에 대한 시나리오 검사를 통하여 이자율 위험에 대한 PAD 추가
Step4	-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되는 리스크의 특징을 고려하여 2, 3 단계에서의 PAD를 조정 Reproject Assets and Liabilities 배당 등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를 반영

보험부채인 책임준비금의 평가에 있어 미래의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이나, 이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선임계리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라. 캐나다의 보험부채평가제도의 특징

캐나다 보험부채평가제도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회계(GAAP)와 감독회계(SAP)가 단일화되어 있다. 캐나다의 감독기구는 감독목적회계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 일반목적회계기준과 다른 기준을 제시한 사례는 없다.

둘째,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매우 높다.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는 보험회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리실무에 의해 평가하는 것으로만 정의¹⁵⁾

하고 수리실무는 CIA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외부계리사의 감사를 2003년부터 실시하였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일반회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평가는 선임계리사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다. 다만, OSFI¹⁶⁾는 계리사간 방법의 차이에 따른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통일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셋째, 보험부채에 대하여 세무상 제한이 없다. 즉, 보험회계에서 계상된 부채를 기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부채평가에 따른 변동성 심화예상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 중이다.

넷째, 자산부채평가법 역시 영업보험료식 준비금제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역편차마진을 설정하고 있다. 영업보험료 방식을 근간으로 한 자산부채평가법은 신계약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부(-)의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PAD라고 하는 역편차마진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장래의 현금흐름 추정시 최선추정에 근거하여 기초율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역편차를 마진으로 설정토록 하여 분리운영하고 있다. PAD는 재무제표에 책임준비금에서 분리해 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산 과정에서 분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연구소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테스트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시나리오 테스트는 확률론적 테스트와 결정론적 테스트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일본 보험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¹⁷⁾는 캐나다제도에 대한 특징을 회계·계

15) 보험회사법 365조 : 「보험계리사는 사업년도말에 감독국장이 결정하여 변경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수리실무 및 감독국장이 정한 추가 지시에 따라서, 회사의 보험 수리적 및 그 외의 보험계약 채무 등을 평가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16)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 캐나다 연방하의 보험, 은행, 신탁, 대출 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한다.

17) 荻原 邦男(오기와라 쿠니오), “諸外國における生命保險負債評価の変貌(その1)”,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05 Vol.40, NLI Research Institute, 2005. 12.

리적 측면과 보험부채 평가방식에 대하여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표 III-3> 캐나다 제도상의 주요특징

회계·계리적 측면	책임준비금(보험부채) 평가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회계와 재무회계의 단일운영 - 계리사의 독립성이 높음 - 보험부채에 대한 세무상 제한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보험료방식을 채용 - 역편차마진 설정을 명시화 - 금리리스크에 대비하여 시나리오 테스트 채택

마. 캐나다의 보험부채평가제도의 원칙

캐나다 SOP(Standard of Practice for the Valuation of Policies of Life Insurers) 제3장에서는 보험부채평가의 주요 원칙¹⁸⁾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한 원칙들은 기준의 취지, 허용할 만한 일정 범위 존재, 계속기업 기준, 자산과 부채 간의 상호관계 고려,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치 고려, 과도하진 않으나 충분한 수준의 산출, 종합적인 부채 평가 등이다.

이는 기준의 취지를 잘 준수한다면 기준을 문자 그대로 따르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의미하며, 부채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정확한 측정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허용되는 일정한 범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채의 평가는 계속기업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부채의 평가는 자산과의 상호 관계를 고려한 뒤에 결정되어야 하고¹⁹⁾, 자산과 부채의 명백한 미래현금흐름 분석에 의해서 결정되며,

18) Committee on life insurance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of Practice for the Valuation of Policies of Life Insurers, 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 2001. 10. p6 ~ p7

간편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계리사는 현금흐름 분석에 의해서 그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예측가능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유효한 보험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우발채무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하고, 계약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계약자의 합리적인 기대치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경험치에 따른 PAD와 예상시나리오에 따른 준비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PAD는 보험부채에 대비하기에 과도하진 않으나 충분하다고 평가되는 적절한 수준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보험사는 발생가능한 모든 가정된 위험에 대해 종합적인 적정 부채 평가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바. 캐나다 회계제도의 최근 동향

1) 투자자산의 시가평가제도의 도입

캐나다의 경우 회계제도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의 평가나 공시에 관한 IFRS(IAS 32, 39)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년도부터 강제 적용될 예정이고, 실질적으로는 200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며,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이 인정²⁰⁾된다.

생명보험회사의 회계제도의 특징은 CICA Handbook의 3855절 규정에 의하여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IAS 39의 규정을 적용하고, 금융상품 및 자회사관련회사 이외의 투자자산에 해당되는 생명보험 투자자산은 종전대로 이동평균 시가법에 의해 자산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 자산과 부채는 독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IASB의 보험회계 방향성과는 차이가 있다.

20) 캐나다 공인회계사협회가 발행하는 회계기준 및 가이드스를 모은 Handbook 개정이 2005년 4월 1일에 공표되었다.

2) 투자자산 시가평가 도입에 따른 자산·부채 불일치 논의²¹⁾

주식에 대한 15% rule 및 채권에 대한 상각원가법의 폐지로 인해 자산과 부채에 대한 불일치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그 대응방안으로 캐나다 계리사회에서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대응방안은 첫째, 부채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에 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둘째, 보험 부채에 대응하는 채권은 만기보유 채권에 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셋째, 보험 부채에 대응하는 새로운 자산의 분류를 도입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넷째 보험 계약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을 모두 트레이딩 자산에 계상하는 방법이다.

21) 2004년 6월 열린 캐나다 계리사회 세미나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2. 영국

영국에서는 장기보험상품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장기보험부채와 자산의 변동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탄력적 요구자본(Resilience Capital Requirement)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이전에는 탄력적 준비금(Resilience Reserve)이라 하여 부채로 계상토록 하였으나, 2004년 이후 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2004년 이전에는 부채에 대한 현금흐름방식의 부채평가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는 캐나다의 자산·부채법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즉, 캐나다의 자산·부채법은 부채의 현금흐름뿐만 아니라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하여도 고려하여 부채를 평가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부채의 현금흐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0~2002년 주식시장의 하락에 따라 자산의 변동에 대한 부채의 변동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2004년 Twin Peaks²²⁾ Approach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산변동과 부채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캐나다의 부채평가에 있어서는 자산의 변동위험을 장기에 걸쳐 평준화 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로 현실적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법정 접근방식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배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유배당 자본항목(WPICC; with-profits insurance capital component)을 설정하여 이익을 이연하게 된다²³⁾.

22) twin peaks는 the regulatory peak와 the realistic peak로 구분된다. 실질 잉여금과 법정잉여금을 구분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IAS 32, 39에 따른 자산의 시가평가제도의 원칙을 가장 가깝게 준수하고 있는 것은 영국의 회계제도라 할 수 있으며, 보험에 대한 회계의 기본방향인 자산부채법(Asset-Liability Approach)을 가장 가깝게 준수하는 것은 캐나다의 회계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나라의

가. 영국의 보험회계 법규체계

영국의 생명보험회계에 대한 법규체계는 보험회사법 18조 생명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보험계리사에 의한 정기조사에 근거하고 있다. 보험회사법 제18조에서는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에게 조사를 받도록 정의하고 있으며, 선임계리사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동 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생명보험사업에 의한 부채액 평가, 부채를 초과하여야 하는 합당한 자산액의 결정 및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이며, 동 조항에 따라 보험회사규칙에서 부채평가방법에 대하여 결정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부채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청(FAS;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서 요구하는 Prudential Source Book(PRU), Consultation Paper(CP) 및 영국보험계리사회 생명보험 위원회에서 제정하는 Guidance Note(GN) 등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표 III-4> 영국의 보험회계 관련 법규체계

구분	법규 내용
Insurance Companies Act	- 생보사의 보험부채평가 및 자본적정성 규제에 관한 근거 제시 - 선임계리사의 역할 등 설명
Prudential Source book (PRU)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서 제정 - 감독회계에 관한 규정
Consultation Paper (CP)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서 제정 - 감독회계에 관한 사항 중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제시
Guidance Note (GN)	- Faculty and Institute of Actuaries(영국 계리사회) - 보험부채평가에 대한 실무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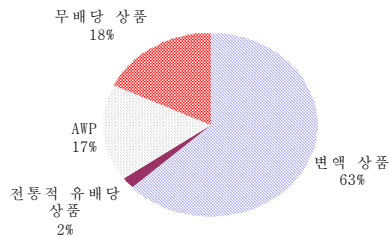
보험부채 평가제도는 향후 제정될 Phase II에 있어서 중요한 사례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 논의도 이에 근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영국의 생명보험시장 환경

1) 저축성상품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영국보험상품은 저축성 상품이 주력이고, 또한 해약환급금이 보증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AWP(Accumulating with-profit)²⁴⁾로 불리는 상품이 주력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상품은 저축의 성격이 강한 상품으로, 이러한 상품이 주력 상품화됨에 따라 투자된 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부채와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림 III-2> 영국의 생명보험상품 포트폴리오



주 : 2002년 신계약 수입보험료 기준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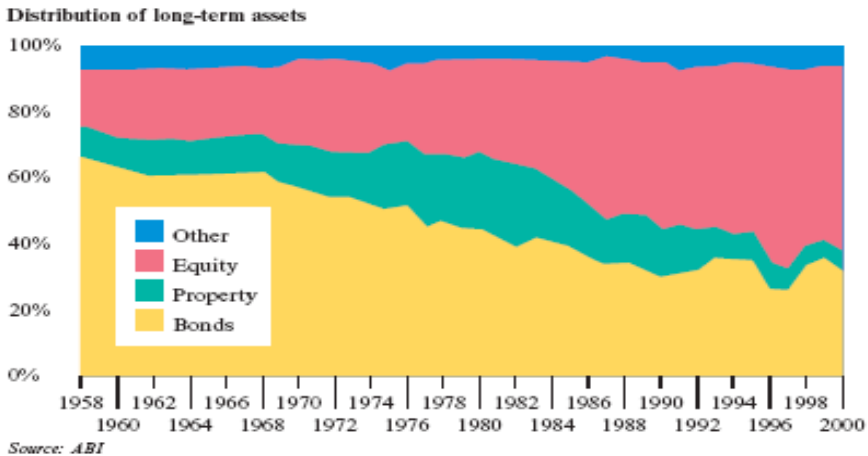
24) AWP는 계약자의 몫이 용이하게 확인가능하고 개인계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수익을 평준화하고 있다. 변액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이익을 평준화하는 점에서 전통적 유배당상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25) 유배당 보유계약기준으로도 AWP에 속하는 펀드는 전체 펀드의 57%를 차지한다.

2) 주식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영국에서 생명보험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살펴보면 1958년에는 60%를 상회하던 채권의 비중이 2000년에는 40% 미만으로 하락하였으며, 반면 주식의 운용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3> 영국의 생명보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출처 : Howard Froggatt and Icki Iqbal, Smashing With Profits Business, the Staple Inn Actuarial Society, 2002. 10., p7.

주식보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적인 유배당상품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을 장기에 걸쳐 평균화하여 배당으로 돌려주는 형식을 취했으나, 2000년에서 2002년간에 걸친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자산평가와 부채평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에는 감독회계를 Asset-Share라 불리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AWP와 같은 주력상품에서 Asset-Share 방식을 도입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계약자의 몫을 명확하게 하고 해약급부의 기준으로 활용하며, 이를 토대로 부채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다.

다. 영국의 감독회계

FSA에서는 2004년 8월 Consultation Paper 195(CP 195)²⁶⁾에서 Twin Peaks Approach라고 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Twin Peaks Approach 방식은 기존의 법정 책임준비금제도를 유지하면서, EU규제를 만족시키는 현실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는 은행의 Basel II에 의한 자본규제방식에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Twin Peaks Approach의 개요

Twin Peaks Approach의 경우 종전의 법정 기준 외에, 계약의 소멸시 지불하는 배당인 장래 최종 배당 등의 추정 채무까지 고려하여 실제적인 부채 평가를 실시한 후 현실적 자산과 현실적 부채의 차액에 해당하는 실질잉여금인 현실평가를 통한 잉여금과 법정자산과 법정부채와의 차액인 법정잉여금인 종전의 잉여금과의 차이는, 신설 자본 항목인 유배당자본항목(WPICC; with-profits insurance capital component)에 계상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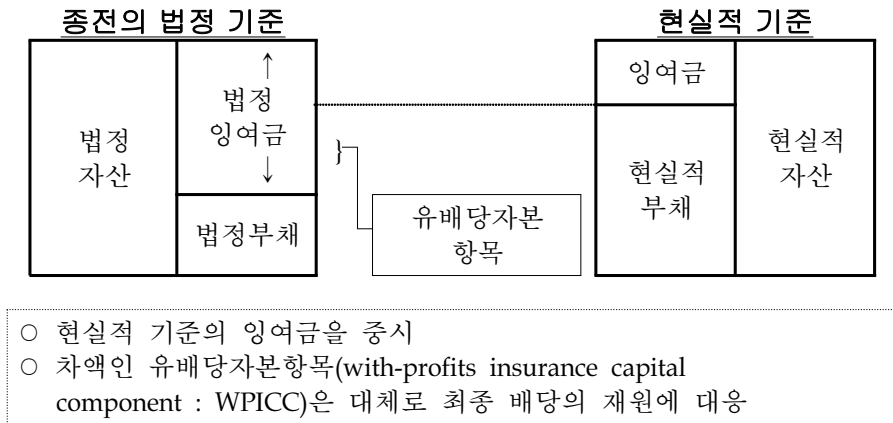
Twin Peaks Approach는 모든 회사가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유배당보험 사업을 실시하는 대규모 생명보험회사²⁷⁾에 대해서만 적

26)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Enhanced capital requirements and individual capital assessments for life insurances, 『Consultation Paper 195』, FSA, 2003. 8

27) 유배당부채액이 5억 파운드 이상인 보험회사는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그 미만은 임의 적용할 수 있다. 무배당상품만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용된다.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보험회사는 종래의 법정준비금 평가 방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III-4> Twin Peaks Approach의 개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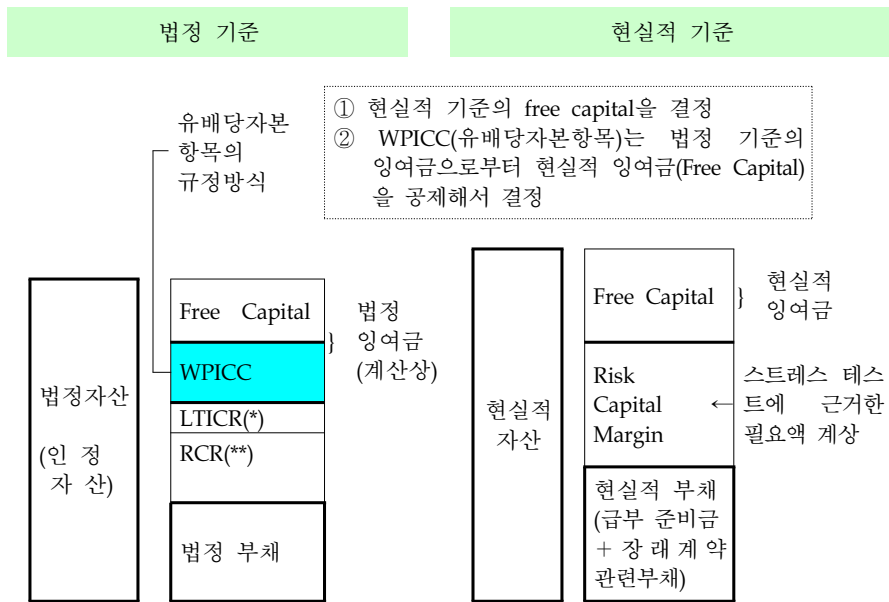
이러한 Twin Peaks Approach의 산출방법은 법정자산에서 법정부채를 차감하고, LTICR²⁸⁾와 RCR²⁹⁾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법정 잉여금을 산출하게 된다. 다음으로 현실적 자산³⁰⁾에서 현실부채³¹⁾와 RCM³²⁾을 차감하여 현실적 잉여금을 구한다. 이후 법정 잉여금에서 현실적 잉여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바로 WPICC에 해당되게 된다. 만일 WPICC가

28) Long Term Insurance Capital Requirement : 현행의 최저 마진과 동일한 개념이다.
 29) 탄력적 요구자본(Resilience Capital Requirement)은 Stress test를 거쳐 산출된 필요 적립금액을 의미한다.
 30) 현실적 자산에는 인용자산을 초과하는 자산을 포함한다.
 31) 일반적으로 Asset-Share 방식에 의해 산출된다.
 32) Resilience Capital Requirement Component의 현실적 기준이다.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이 된다. WPICCC는 최종적인 배당을 위한 준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확정되지 않은 배당에 대한 안정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이다.

FSA에서는 WPICCC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종 배당이 미확정적인 것이고,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확약한 사항이 아니라는 업계의 반대의견에 따라 독립된 자본 요소로 결론지어졌다. 따라서 WPICCC는 자본이지만, 부채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림 III-5> Twin Peaks Approach의 개요 2



주 : 1) *는 Long Term Insurance Capital Requirement
 2) **는 Resilience Capital Requirement
 3) WPICCC는 부채에 포함할 수 있었지만, 자본으로 취급됨.

① Consultation Paper(CP) 195의 주요 특징

CP195에서의 책임준비금 평가방식에 대한 주요 특징은 Asset-Share 방식인 과거법의 인정, 순보험료방식에서 영업보험료방식으로의 변경, 보증옵션의 적정 평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순보험료 개념은 영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의 순보험료는 영업보험료에서 장래에 배당으로 인해 환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리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이 된다.

개념상 가장 큰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영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차감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순보험료가 계상될 수 있는 데 반해 영국은 매년도 순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② 부채평가에 있어서 자산할당(Asset-Share) 적용

순보험료식 장래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자산할당(Asset-Share) 방식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순보험료식 장래법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AWP 상품의 증가에 따른 문제이다. AWP 상품은 과거 투자실적에 근거하여 계약자 배당이 변경되는 상품으로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둘째, 장래 배당을 위한 마진 산정시, 보험계리사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부채 계상시 부채에 과도하게 여유분을 감안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 문제이다.

자산할당³³⁾이란, 어느 계약군단(또는 개별계약)의 과거 수입지출에

33) 자산할당(asset-share)는 배당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에도 사용되어 왔다. 90년대에 들어와, 상호회사의 주식회사화로 전환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과거 계약자가 남긴 estate의 평가에도 이용되었다. 그러나 AWP가 주력상품화된 이후 asset-share를 이용해 계약자배당을 산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asset-share의 계상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다면, 보험료 납입이 자유로운 AWP에서는 계약별 현금흐름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어 개별계약별로 asset-share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군단

따른 투자운용의 수지잔액이며, 자산할당 방식이란, 이것을 계약군단(또는 개별계약)의 부채액으로 계상하는 방식이다. AWP와 같은 상품은 그 시점의 계약자 몫을 정하기 위해서, 또 장래 배당의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종래부터 자산할당을 산출해 왔다.

③ 영업보험료 방식의 변경

순보험료 방식의 준비금 산출에 대하여 영국의 FSA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FSA의 금융감독청장 John Tiner은 2003년 연설³⁴⁾에서도 순보험료식에 대하여 "arcane actuarial rule called net premium method"라는 표현을 써 순보험료 방식에 대한 불투명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FSA에서는 순보험료식 공제액 산정부분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보험료방식을 도입하였다.

현재 asset-share를 사용하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는 장래법에 따른 순보험료식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asset-share를 사용하여야 하는 AWP와 같은 상품은 영업보험료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현실적 부채의 구체적인 사항 부연

우선 PRU7.4.105R³⁵⁾에서는, 유배당계약의 현실적 부채 평가시 선택하여야 하는 방법과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보험상품에 적합해야 하며, 둘째 적절한 이유가 없는 임의적 변경은 실시하지 않으며 해마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셋째 계약자를 공정하게 취급하는 규정상의 의무를 회사가 완수할 수 있는 수준의 동일한 급부를

별 산출의 개념이다.

34) John Tiner(영국 금융감독청장), Current Consultations and the Regulatory Agenda, Westminster & City 20th Anniversary Life Insurance Conference, 2003. 2.

35) PRU는 Prudential Source book을 의미한다. 항목 번호에서 R은 FSA의 규정을 의미하며, G는 계리사회의 지침을 의미한다.

유지하며 이것을 상회하지 않는 요금을 고려하고, 넷째 일반적으로 인정된 수리 실무를 고려하고, 다섯째 회사가 정하는 PPFM³⁶⁾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유배당계약에 관한 현실적 부채는 급부준비금 (benefit reserve)과 장래 계약관련 부채(future policy related liabilities)로 구성된다.

① 급부준비금(benefit reserve)

과거법(asset-share approach)이나 장래법(the bonus reserve valuation approach)중 어느 쪽이든 사용해야 한다(7.4.116R)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법은 일반적으로 자산할당을 이용하고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는 종류의 계약에 적용되며, 그 이외는 장래법이 적용된다³⁷⁾.

과거법은 과거 수입지출의 운용수지를 해당계약(또는 계약군단)의 부채액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부채액으로 배분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규정³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 보험료, 비용, 급부, 투자 수입 및 자산가치의 증감, 세금, 재보험 관련 수지, 주주배당, 회사에서 행하는 자산할당의 증감액을 고려하고, 둘째 자산할당은 계약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PPFM에 부합해야 한다.

자산할당은 현재 시점의 계약자 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래의 급부를 충분히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자산할당을 가지고 부채를 계상하는 것은 영국 상품이 일반적으로 해약환급금을 보증³⁹⁾하지 않기 때문이다.

36) Principles and Practices of Financial Management. 「재무 관리에 있어서의 원칙과 실무에 관한 기준서」로 2003년 1월의 CP167에서 제안되었으며, 2004년 3월부터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동 기준서의 내용은 유배당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관리, 이익의 평준화에 관한 사항 및 배당정책 채택에 대한 계약자 공시 등을 담고 있다.

37) 영국 계리사회 지침 노트 GN45의 3.2.1.1에 의한다.

38) PRU 7.4.119R, 7.4.122R

39) 이러한 보증이 존재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과거법이라고 해도 보증과 관계되는 채무액을 별도로 산출해 가산해야 한다. 이 경우는 “장래 계약 관련

자산할당의 장단점에 대하여 David Dullaway and Peter Needleman은 2003년 10월 발표된 논문⁴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만약 자산할당이 거래된다면 매매에 있어 특별한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평균화가 이루어지므로 이것을 즉시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둘째, 자산할당은 계약상의 급부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점은, 자산할당 방식의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특히 개인 계좌별 평균화되지 않은 자산할당이 경영 상황의 여하에 관계없이 지불된다고 기대되는 사실상의 표준이 될 수 있다.

셋째, 자산할당은 배당 결정의 한 요소에 지나지 않고, 평균화, 과거의 경험치 보다 넓은 군단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양로보험의 배당률을 종신보험의 배당에 사용하는 일도 발생되고 있다. 즉 자산할당으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넷째, 자산할당 기법은 말하자면 풋옵션이며, 오히려 현재의 보증액+장래의 재량적 급부의 두 가지 요소로 나누는 콜옵션을 채용해야 한다. 계약자나 감독 당국에 있어서 알고 싶은 것은 확정된 금액일 것이다.

자산할당기법은 배당 수준의 검증뿐 아니라 급부액의 산정에 이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면서 통일된 기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영국 계리사회를 중심으로 검토가 되었으나, 아직 관련 규정은 개념적인 수준이며, 계산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보험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⁴¹⁾

이 점과 관련하여 guidance note 7.4.126G는 “자산할당의 정의, 산출 방법은 몇 가지 요소에 의존한다. 예를 들면, 회사의 실무 기준, 회계 시스템의 수준, 보유하고 있는 과거 경험치의 정밀함과 유배당의 자산 구

부채(future policy related liabilities)”에서 계상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40) David Dullaway and Peter Needleman, *Realistic liabilities and risk capital margins for with-profits business*, The Actuarial Profession - making financial sense of the future, the institute of actuaries, 2003. 11.

41) 영국 계리사회가 정하는 가이던스 노트 45(유배당자본 컴퍼넌트)에 Asset Share의 언급이 있지만, 개념적인 설명에 머무르고 있다.

성 등이다. 이로 인해 각사의 자산할당 산출 방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과거법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특정 기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 방법의 다양성을 인정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규정으로 한 것이다. 7.4.119 R은 “과거법이 지켜야 할 최저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리사 업무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래 현금흐름의 예측은 기본적으로 최선추정의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장래의 급부에는 첫째, 사망, 만기시의 보증지불액, 보증하고 있는 해약급부, 납입보험금액, 둘째, 계약자의 권리가 확정 되어있는 확정배당, 셋째, 장래의 연차 배당 및 최종 배당으로 계약자를 공평하게 취급하는 법정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수준 이상의 금액을 포함한다.

즉, 통상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장래의 급부에 포함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를 공평하게 취급한다」⁴²⁾라는 의무에 따라 포함되었다.

<표 III-5>은 영국계리사회에 2003년 11월 24일에 개최된 Sessional meeting에서 발표된 자료 중 과거법과 장래법의 비교 예시이다.

42) 「계약자의 공평한 취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CP207 “Treating with-profits policyholders fairly” 및 그 개정판인 CP04/14 “Treating with-profits policyholders fairly - Further consultation, feedback on CP207 and near-final text”가 발표되어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표 III-5> 과거법과 장래법에 의한 현실 부채평가 비교 예시

구분	과거법 (Asset Share Approach)	장래법 (BRV approach)
유배당 급부 준비금	4,698	5,379
향후 공제	(151)	-
미래 계약보증 비용	670	236
미래 재무보증 비용	375	70
미래 평준화 비용	36	(6)
기타 장기 부채	51	-
현실적 부채	5,679	5,679

출처 : David Dullaway and Peter Needleman, Realistic liabilities and risk capital margins for with-profits business, The Actuarial Profession - making financial sense of the future, the institute of actuaries(영국계 리사회), 2003. 11. p13.

② 장래 계약 관련 부채(future policy related liabilities)

장래 계약 관련 부채는 보증부분의 옵션가치 등 급부준비금에 포함되진 않지만 조건부 채무로 존재하는 것을 계상하는 항목이다⁴³⁾. 특히, 자산할당을 이용하여 급부준비금을 산출하는 경우는, 보증, 옵션, 평준화에 관한 부분의 추가를 필수적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4) 법정 준비금 평가(regulatory approach)의 변경사항 부연

① 탄력적 요구자본(Resilience Capital Requirement)의 변경사항

43) PRU의 7.4.137항에서부터 7.4.189항에 규정된다.

탄력적 요구자본은 기존에 탄력적 준비금이라고 하여 부채항목으로 계상이 되었다. 그러나 EU규정에 의거하는 지급여력 규제의 대표적 항목인 「책임준비금의 4%」 항목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중 준비금이라는 비판이 있어 이를 자본 항목으로 옮기게 되었다.

탄력적 요구자본에 대한 Stress Test는 주식의 경우 주식가치의 최소 10% 하락과 FTSE⁴⁴⁾ Actuaries All Share Index 수익률이 장기채권 수익률 $\times 4/3$ 와 동일한 수준이 되는 주식의 시장가치 하락비율(%)과 25% 중 큰 시나리오를 택해 하도록 되어 있다. 이자율의 경우에는 장기채권 수익률의 20%와 동일한 고정이자율증권의 수익률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하여 Stress Test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최소 10%, 최대 20%내에서 테스트를 실시하여, 이전 3회계연도 동안의 부동산 평균지수에 대한 현재의 부동산지수 비율의 증가 시, 더 큰 하락폭을 적용하여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44) FTSE :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Index. Financial Times사와 런던 증권거래소가 1995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 전세계로 투자하는 대형 펀드 중 특히, 유럽계 펀드의 운영에 주요지표를 생성하는 기관이다.

<표 III-6> 탄력적 요구자본에 적용되는 Stress Test

리스크	스트레스에 대한 규정
주식	“UK주식가치의 최소 10% 하락”과 “아래의 두 가정 중 작은 시나리오”중 큰 쪽을 선정 - FTSE Actuaries All Share Index 수익률이 장기채권 수익률×4/3와 동일한 수준이 되는 주식의 시장가치 하락비율(%) - “25% - 현재의 FTSE Actuaries All Share Index와 최근 90일간의 평균지수의 감소비율(%)” ※ 해외 주식의 경우도 개괄적으로 동일한 테스트 실시
이자율	- 장기채권수익률의 20%와 동일한 고정이자율증권의 수익률 상승 또는 하락(percentage point) ※ 해외채권의 경우 해당하는 국가의 국채수익률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부동산	- 최소 10%, 최대 20%내에서 테스트 실시 - 이전 3회계연도 동안의 부동산 평균지수에 대한 현재의 부동산지수 비율의 증가시, 테스트시 더 큰 하락폭을 적용

② 법정평가만 실시하는 회사의 책임준비금 평가

법정평가만 실시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었는데, 첫째, 책임준비금 계상 시 사용한 전제조건 및 이 전제조건을 사용한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방식의 변경 시 변경사유 및 그 영향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기록보존을 하도록 규정화⁴⁵⁾하였다. 또한, 순보험료식

45) PRU7.3.20 R : A firm must make, and retain for an appropriate period, a record of:

- (1) the methods and assumptions used in establishing its mathematical reserves, including the margins for adverse deviation, and the reasons for their use; and
- (2) the nature of, reasons for, and effect of, any change in approach, including the amount by which the change in approach increases or decreases its mathematical reserves.

준비금을 사용하는 회사를 고려해 PAD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기타 사항으로 평가이율에 대한 사항과 옵션평가에 대한 사항을 명확화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래 현금흐름에 반영하는 평가 이율⁴⁶⁾은 현재 자산, 장래 재투자, 및 장래부채 순현금흐름(net cash flow)이 대상인 장래의 자산운용에 의해 예상되는 리스크 조정수익의 97.5%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하고, 전체의 리스크 조정 이율은 각 자산 분류의 리스크 조정 이율을 각각의 자산시가 중요도에 따라 평균한 값, 즉 가중 평균한 값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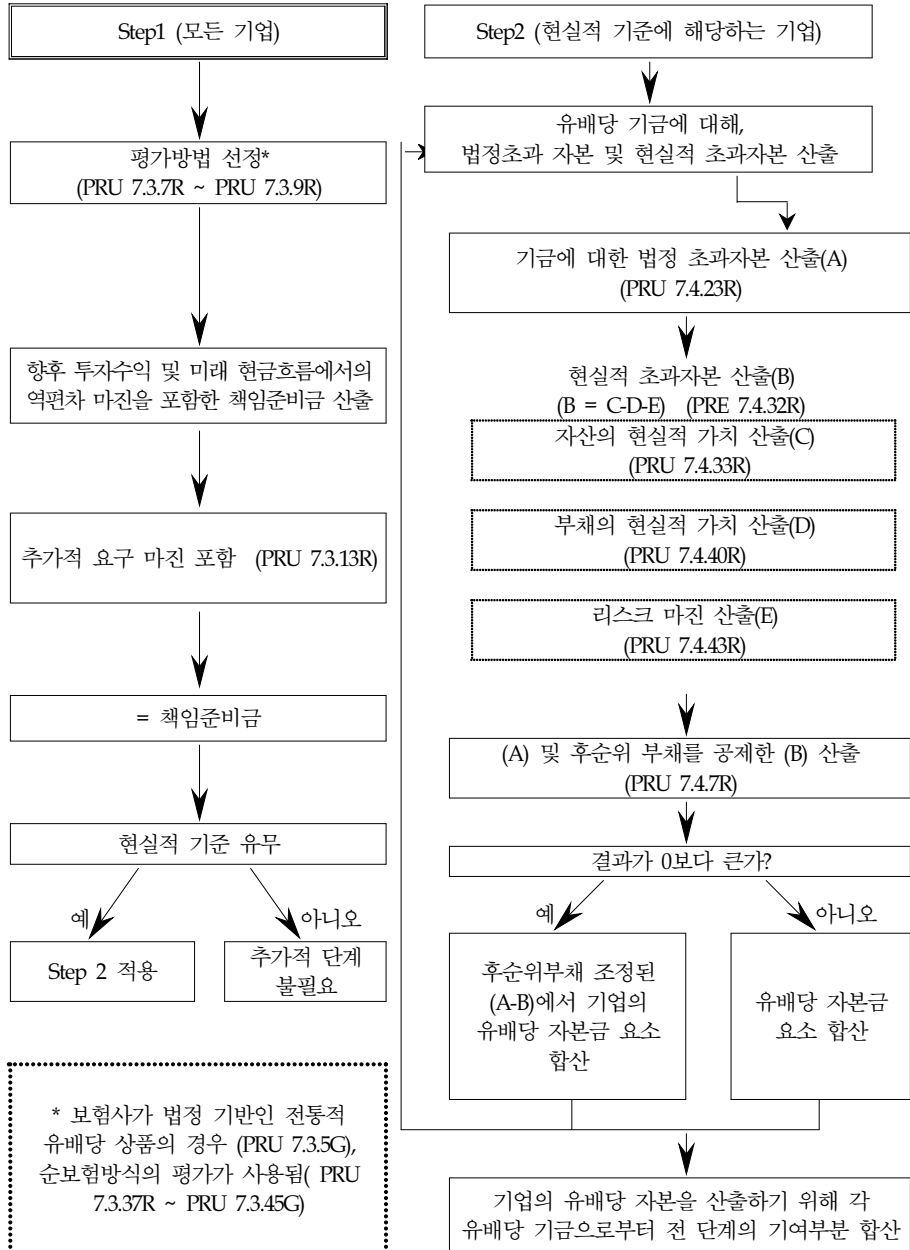
주식의 투자수익이율은 배당이율이 주식이익(earnings yield)을 넘는 경우는 배당이율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두 가지의 평균⁴⁷⁾으로 하게 된다. 재투자 부분에 대해서 현실 평가와 법적 평가의 상한이 부과되어 있으며, 현실평가는 길드채권의 선도금리(forward rate)를 상한으로 하며, 법정평가는 다음 식(길드채권 이율, 길드채권이 3% 이상인 경우 3%+3% 초과금액의 2/3, 6.5%)에서 산출된 값 중 적은 값을 상한으로 하게 된다.

보험옵션은 만기시 현금수령 또는 보증이율로 연금을 수령하는 옵션과 보증된 기간 중에 다른 계약으로 전환할 권리, 또는 일정한 수준의 해약환급금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옵션행사 시 직접적인 영향으로 채무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책임준비금에 포함하여야 하며, 해약급부가 보증되는 경우 책임준비금은 어떠한 시점에서든 그 시점에 보증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46) PRU 4.2.28 R ~ 4.2.47 R을 참조.

47) 기존에는 배당 이율의 2배를 상한으로 하는 제한이 있었지만 폐지되었다.

<그림 III-6> 영국의 보험부채평가 업무 흐름도



출처 : FSA, FSA Handbook Release 045, 2005. 8., Annex G1.

3. 호주

호주 생명보험 회계의 특징은 시가 평가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 금융자산을 시가평가 하고 있으며, 부채도 시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채와 자산 변동과의 연동성이 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것은 호주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즉, 호주는 Superannuation으로 불리는 개인 계좌방식의 퇴직급여 적립 제도가 크게 발달하여 저축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나라이다. 이 때문에 자산의 시가변동과 함께 부채도 과거법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부채로 계상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장래법으로 부채 평가하는 상품에 대해서 MOS(Margin On Service)라 불리는 순연법에 따른 부채 평가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방법은 장래 이익의 현재가치를 계약 가입 시점에서 평가해, 이것을 그 상품이 제공하는 매년도 서비스의 양에 비례하여 이익이 발생하도록 이익을 연기해 가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순연법」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기준이다. 영연방계의 나라 중에서도 장래법적용 상품에 대해 극단적인 순연법을 채택하고 있는 점도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추가적인 부연설명을 하면, 정기보험 등 전통적 상품에 MOS가 적용되고 있다고는 해도 저축성 상품이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향은 작다.

가. 호주 생명보험 부채 평가의 개요

미국이 재무회계(GAAP)와 감독회계(SAP)로 서로 다른 부채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호주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감독회계와 재무회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계약자 보호를 위해 재무건전성 측정에 초점을 맞춘 감독회계에서는 지급여력 기준과 자본 충분성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다 보수적인 부채평가를 한 재무정보를 추가로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감독회계를 재무회계와 차별화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감독회계가 일반적인 재무회계의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1) 법규 체제의 개요

호주는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 1995, 이하 LIA1995라 함)이 계약자보호를 위한 감독법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 법은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험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제5부, 제6부에서 정하고 있다.

LIA1995에서는 선임계리사의 의무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데 선임계리사에 대해 회사 재정상황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업연도말 재정상황을 조사하고 이사회에 서면 보고하며 그 사본은 APRA(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하는 APRA에서는 생명보험법에 근거하여 Prudential Rules(이하 PR이라 함) 35 Financial Statement를 관할한다. PR 35에서는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증권거래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된 호주 회계기준 심의회(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 Board)에서는 AASB1038 생명보험 계약⁴⁸⁾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무기준으로는 생명보험 계리기준 심의회(Life Insurance Actuarial Standards Board : 이하, LIASB⁴⁹⁾이라 함)에서 제정하는 Actua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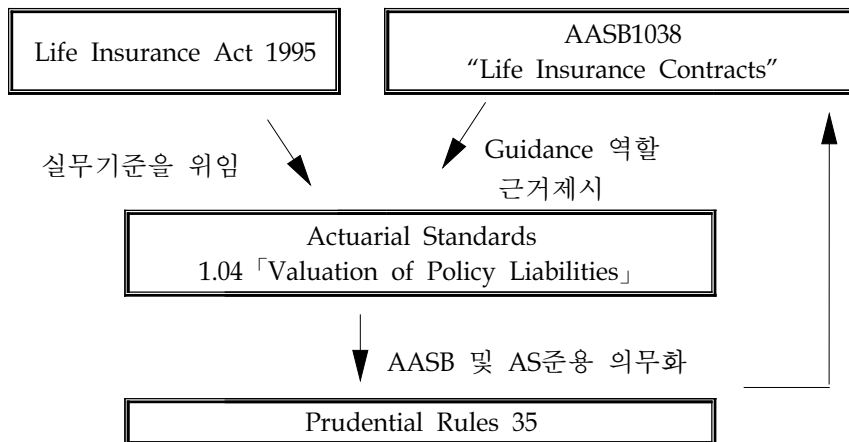
48) 1998년 제정하였으며 2005년 9월 개정시 Life Insurance Business에서 Life Insurance Contracts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49) 생명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구로 1995년 7월에 구성되었다.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장, 정부기관인사 1명, 비계리사인 인사 1명, 4명의 계리사로 구성되었다.

Standards(이하 AS라 함)가 있다.

LIA 1995의 제6부 114조 「Method of valuing policy liabilities」에서 “보험부채의 평가는 AS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보험부채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AS에 위임하였다. 또한, AASB 1038 제8장에는 부채평가시 계리실무기준이 Guidance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리실무기준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보험회계 관련 규정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Ⅲ-7>과 같다.

<그림 Ⅲ-7> 보험회계 관련 규정의 관계



2) Margin On Service(MOS)의 개요

AASB 1038 8.1에서는 보험부채평가방법은 과거법과 장래법 어느 한 쪽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래법은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적정이율로 할인하는 기법을 말하며, 과거법은 과거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부채액을 정하는 기법으로 자산운용성과를 반영한 계약자

배당을 부채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국내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제도와 유사한 성격에 해당된다.

MOS 개념의 근간이 되는 장래법은 「최선추정부채」(BEL : Best Estimate Liability)와 「장래이익현가」(PVFP : Present Value of Future Profits)로 구성된다. 최선추정부채란 안전할증이 고려되지 않은 최선추정 예측에 따른 현금흐름에 대해 평가이율로 할인하여 계약부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현금흐름에는 보험급부, 수입보험료는 물론 비용, 계약급부 등 모든 현금흐름을 포함한 이른바 영업보험료식으로 계상하게 된다. 장래이익현가란 미래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가치 평가액을 의미하며, 장래이익현가를 계상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MOS 기법의 핵심에 해당된다.

장래이익현가는 최선추정에 의한 장래 지출액 시가에서 장래 수입 시가를 차감한 부채평가액에 대해 자산액과 대비한 이익을 산출한 후 해당되는 이익을 장래이익현가로서 부채로 인식한다. 이후 장래이익현가를 매년 적절히 이연하면서 이익으로 계상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적절히 이연하면서 이익으로 계상되는 부분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이익이란 개념에 따라 MOS라는 명칭이 붙여진 것이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표로 Profit Carrier(이하 PC)를 정하고 있으며, PC는 결국 수익의 발생원으로 매년 발생하는 이익은 PC에 비례하여 계상된다.

여기서 서비스 마진은 수익발생원인 서비스 비용의 일정률로 계상하며, AS1.04 SECTION6 Profit Carriers and Profit Margin에서는 이를 (i) 사망 및 장애, (ii) 투자수익, (iii) 신계약비, (iv) 투자운용, (v) 배당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나. 호주의 보험회계 관련 최근 동향

1) IFRS의 적용

호주 회계기준 심의회(AASB)는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도부터 IFRS를 적용하는 것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AASB가 정하는 회계기준도 기본적으로는 IFRS에 기초하여 기준을 정비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AASB가 정하는 기준서는, 원칙적으로 IFRS 4에 대응하는 기준으로 AASB 4와 같이 IFRS의 기준에 대응하여 규정의 번호를 교부한 체계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AASB 4는 보험계약 전반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관해서 각각 선행 기준인 AASB 1038, AASB 1023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수정해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때문에 AASB 4의 적용 범위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만족하는 고정 요금의 서비스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어 생명보험 계약에는 종전대로 AASB 1038을 적용하게 된다.

① 금융상품 시가 평가에의 대응

2005년 9월에 채택되어 개정된 AASB 1038 Life Insurance Contracts⁵⁰⁾의 10.2절에 의하면 보험 회사가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IAS 39에 준거한 AASB 139의 범위에 있는 금융자산으로, 생명보험 부채 및 투자계약 부채에 적합한 자산이며, IAS 39로 시가평가가 인정되고 있는 자산은 IAS 39에 의해 시가 평가를 한다. 이것은, IAS 39에서 공정가치 옵션으로 불리는 「모든 자산을 공정 가치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인정하고 있어 이는 종전대로 모든 금융자산을 시가회계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시점에서 이 방침을 채용한 국가는 호주가 유일하다.

전면 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개정공개초안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유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IAS39는 상각원가법의 선택을 허락하고 있지만 이 상각원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 상각원가법을 적용할 경우 호주의 재무보고제도의 후퇴를 의미하기 때문이

50) 적용은 2006년 1월 이후에 개시되는 연도부터 적용이 된다. 다만, 2005년 1월부터의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며, 둘째 공정가치 옵션의 선택은 자산부채 평가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 7월 개정된 AASB 1038에서는 다음에 기술할 두 가지 내용인 평가이율의 변경과 공시 강화를 도모하였다.

종전 규정에서 할인이율은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의 운용 결과에 근거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자산과 부채를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 IASB 보험계약 프로젝트의 논의 사항을 먼저 반영하여 해당 계약의 급부가 성과(the performance of the assets held)에 연결되지 않는 한 무위험이자율을 이용해 할인 계산을 실시하고, 해당 계약의 급부가 성과에 연동되는 경우 보유 자산의 운용결과에 근거하여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개정판 AASB 1038에서는 과거보다 강화된 공시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제 항목에 대하여 결정 프로세스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장래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에 관한 정보제공, 특히 보험리스크에 관한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민감도 분석을 요구하고 경비의 내역에 관한 공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IASB가 IAS 32의 개정을 위한 ED 7 「금융상품 : 공시」에 대해 본질적으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호주의 생명보험 계약에 관한 기준에서는 이것을 의무화하고 있다.